

1. 개정이유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대규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주체와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변경(안 제38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 1)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의 주체와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함

나. 석면안전관리교육 실시방법 확대(안 제38조 제3항)

- 1) 대규모 감염병 발병 시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집합교육으로만 실

시도록 한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유 여부를 확인·조사하여야”를 “포함 여부를 확인·조사해야”로 한다.

제23조 중 “「건축법」 제36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로, “기록·보존하여야”를 “기록·보존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대장”을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38조의4제1항 본문”을 “제1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석면안전관리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를 “석면안전관리교육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을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을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 “측정해야”를 “측정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석면해체·제거업자”를 “발주자”로, “별지 제17호의6서식”을 “별지 제77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석면해체·제거업자”를 “발주자”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자”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증”을 “등록증명”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면”을 “않는 경우에는”으로, “하여야”를 “해야”

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별지 제17호의6서식”을 “별지 제7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① -----	① -----		
<u>함유 여부를 확인 · 조사하여야</u>	<u>포함 여부를 확인 · 조사해야</u>	<u>포함 여부를 확인 · 조사해야</u>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	-----	-----		
의 법령에 따라 수입 · 제조 또	-----	-----		
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	-----	-----		
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	-----		
중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	-----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	-----		
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		
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록 및 보존) -----	록 및 보존) -----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	-----	-----		
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	-----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	----- 「건축물	----- 「건축물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	<u>관리법」 제30조</u> -----	<u>관리법」 제30조</u> -----		
거 · 멸실 신고 시까지 <u>기록 · 보</u>	----- <u>기록 · 보</u>	----- <u>기록 · 보</u>		
<u>존하여야</u> 한다.	<u>존해야</u> -----.	<u>존해야</u> -----.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① -----	① -----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	-----	-----		

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략)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실시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
----- 관리해야 -----.

④ -----

-----.

1. (현행과 같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3. (생략)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3. (현행과 같음)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 -----

----- 관리해야 -----.

② -----

----- 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제121조 제1항-----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석면안전관리교육과 -----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3항-----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 측정하도록 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

----- 별지 제77호서식-----

----- 제출해야 -----
--.

③ -----

----- 공개해

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해체·제거 업자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야 ----.

④ -----

----- 제출
해야 ----.

⑤ -----
----- 발주자-----

-----.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3. 4. (생략)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3. 4. (현행과 같음)

5. -----
-- 등록증명 --. -----

-----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 않는 경우에는 -----
--- 해야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

-

6. (생 략)

② 발주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가. (생 략)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다. (생 략)

2.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현행과 같음)

② -----

----- 제출해야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제2항-----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	----- ----- ----- ----- --- <u>통보해야</u> -----.
---	---